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적극행정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총리 (인사혁신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긴급한 재난·안전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신속하고 과감한 대응이 중요한 만큼, 재난·안전담당 업무 공무원에 대해서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사후적 판단으로도 징계 관련 불이익 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재난·안전담당업무 공무원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3조 신설)

- 긴급한 재난·안전 상황에서 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추진 결과에 대해서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사후적 의결로도 사전 의사결정과 동일한 징계면제 효력 부여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10. 31. ~ 11. 27.)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이 영을 긴급상황에서 공공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제17조제3항 중 “공무원이 제13조에 따라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은 “공무원의 요청에 대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으로 본다.
- ② 공무원이 제1항에 대한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상황이 긴급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경우
 2. 법령이나 지침이 불명확하거나, 신중 또는 복합 재난상황에서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u>제23조(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적용 특례) ① 이 영을 긴급상황에서 공공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제17조제3항 중 “공무원이 제13조에 따라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은 “공무원의 요청에 대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으로 본다.</u> <u>② 공무원이 제1항에 대한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u> <u>1. 재난 및 안전관리 상황이 긴급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경우</u> <u>2. 법령이나 지침이 불명확하거나, 신종 또는 복합 재난상황에서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u>

〈 의안 소관 부서명 〉

인사혁신처 적극행정과	
연 락 처	(044) 201 - 8501